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세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1. 1. ~ 6. 30.)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법인세법 §63의2)

□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제출화면 이동'



'신고서 제출하기'

□ (세정지원)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합니다.

* '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



지방청상담: 032-718-6475 (73 ~ 78), 홈택스상담: 국번없이 126번(1번 → 3번)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 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 1. ~ '23. 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 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율 × $\frac{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

구 분	세정지원 대상	기업수
•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4,117개
	• 관세청*·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767개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184개

-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3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12월말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의 예상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년도종료년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101-	명	2023/12	아래 세부내역 참고

◆ 유의사항
(중간예납 면제 대상)으로 표시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미만으로 중간예납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6.30.)기준 수정신고·기항후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경우까지 반영된 세부내역이므로 아래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간예납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신고 및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처
세무서 법인세과 02-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

사업연도 월수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자감세액	중간예납세액
12	13,451,877	공제감면세액	0	0	40,170	12,097,539	6,048,769
		확정세액					

□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채움 (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신고사항

예납기간: 2023-01-01 ~ 2023-06-30

직전사업연도월수: 12 개월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 원

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파일변환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계산	
101 산출세액	120,927,032	108 중간예납세액 (107×6/직전사업연도월수)	59,564,156
102 공제감면세액	0	109 고용장충투자세액공제액	
103 가산세액	0	109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104 확정세액(101-102+103)	120,927,032	110 차감중간예납세액(108-109)	59,564,156
105 수시부과세액	0	111 (미납세액, 미납월수, 세율)	2.2/10,000
106 원천납부세액	1,798,720	가산세액	
107 자감세액(104-105-106)	119,128,312	112 납부할세액계(110+111)	59,564,156
		113 분납세액	29,780,000
		114 납부세액(112-113)	29,784,156

※ 직전연도월수와 (101)-(108) 부분이 자동채움(프리필드)되는 경우, 금액을 모두 확인하고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정정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 일반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